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
조례증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992. 7. 2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2년 5월 28 일 마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1992년 6월 1일
- 다. 상정일자: 제10회 의회(임시회) 제2차 위원회('92. 7.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하수과장 송인록)

가. 제안이유

조례에 의한 보상금을 이혼, 동거,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

나. 주요골자

이혼자, 동거자, 해외이주자, 행방불명 자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는 단서추가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는 수해보상금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특수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4조의 단서조항을 신설, 주민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상하자는 취지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
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提出年月日 : 1992年5月28日

提 出 者 : 麻 浦 區 廳 長

1. 개정이유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을 이혼, 동거, 해외이주,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주민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이혼자, 동거자, 해외이주자, 행방불명자 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단서추가(안 제4조 단서)

3. 개정(안): 별첨

4.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
지급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망원동수재민보상금지급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다만, 이혼자·동거자·해외이주자·행방불명자 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보상금) 수해보상금은 손해배상소송에 의하여 기 지급된 손해배상액에 준하되 소송비용 및 육체적 정신적 노력의 대가 를 감안 적정수준으로 결정하고 세대주에 게 일괄 지급한다.</p> <p>(신 설)</p>	<p>제4조(보상금)</p> <p>다만, 이혼자·동거자·해외이주자·행방불 명자 등의 경우에는 보상심의위원회의 결 정으로 세대주가 아니어도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p>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
설치조례(안)심사보고서

1992. 7. 20
도시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1992년 7월 2일
마포구청장
나. 회부일자: 1992년 7월 6일
다. 상정일자: 제10회의회(임시회) 제2차위원회('92. 7. 14)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지역교통과장 정영도)

가. 제안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의식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재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위원회의 기능—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안 제2조)

위원회구성—위원장포함 15인 이내로 구성
(안제3조)

3. 전문위원회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조례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

통사고 줄이기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자치구의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업무를 심의할 위원회 설치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교통안전대책에 관한 법적추진체계로 광역자치단체인 서울특별시규칙으로만 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법한 제정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없음
5. 토론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8. 기타

서울특별시마포구교통안전대책
위원회설치조례(안)

提出年月日: 1992年7月2日
提出者: 麻浦區廳長

1. 제정이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안전의식을 활성화하고 교통안전에 대한 재반